

충주시 조정체험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613
----------	------

제출년월일 : 2014. 1.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조정종목의 저변 확산은 물론 조정체험장의 효율적·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리와 운영(안 제4조)
- 나. 휴장일, 이용시간(안 제5조~제6조)
- 다. 시설의 이용(안 제7조)
- 라. 이용료(안 제9조)
- 마. 이용료의 감면(안 제10조)
- 바. 위탁 관리(안 제12조~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붙임
- 다. 합의 : 완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2013. 12. 5. ~ 12. 27.)결과 접수된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완료
 - (3) 부패영향평가 : 완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충주시 조정체험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조정체험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주시 조정체험장(이하 "조정체험장"라 한다)은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24 충주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정체험장"이란 충주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내 조정체험장 건물, 수변시설, 보트 등 조정 체험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딸린 설비 · 비품을 말한다.
2. "조정체험장의 이용"이란 조정체험시설 일부를 일정 시간 동안 체력 단련, 체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관리와 운영)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조정체험장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조정 종목의 진흥에 필요하면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정체험장의 관리 · 운영을 위하여 조정 종목 지도자 출신 등 전문가를 채용하여 관리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휴장일) ① 조정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이나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화요일
 3. 각종 조정대회 개최기간과 준비기간
 4. 시장이 조정체험장의 보수 등에 필요하여 정한 날
- ② 시장은 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라 휴장일을 지정하려면 휴장일 7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① 조정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1회-09:00~13:00, 2회-14:00~18:00

2. 11월 ~ 2월: 1회-10:00~13:00, 2회-14:00~17:00

② 시장은 조정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이용) ① 조정체험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미리 예약하여야 한다.

② 같은 시간대에 조정체험장을 이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이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우선 순위를 정하되, 그 밖에는 이용료 입금 순서로 정한다.

1. 국가나 충청북도, 충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나 행사
3.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 행사
4. 직장인이나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제8조(이용의 거절과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2. 음주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4.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여 정한 사람

제9조(이용료) ① 조정체험장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예약 신청할 때에 미리 내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 국가, 충청북도, 충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80% 감면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나.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3. 반액 감면

- 가. 충주시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한 자
- 나. 충주시에서 후원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행사
-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라.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마.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예약 취소 시 이용료를 반환하며 반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조정체험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면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체험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 만료 9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자 선정기준 등) ① 수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정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 처리 실적 경영 실적 등
- ② 수탁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민의 체력 증진과 조정 발전 등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시설 관리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전대(轉貸)해서는 안 된다.
-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경비를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조정체험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수탁자가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승인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무상 귀속된다.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
 2. 재해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조정체험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이나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충주시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충주시의 시책과 조정체험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90일 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를 비롯한 조정체험장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조정체험장 시설물 등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와 이용자는 시설 내 체험장 운영과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

-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조정체험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나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용료·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나 조정체험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재무 회계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조정체험장 이용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기준(내용)	비 고
	개인	단체 (20명 이상)		
어 른	6,000	4,000	1회 체험 (이론·지상교육, 수상체험)	19세 이상인 사람
청소년	3,000	2,000	"	중·고교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어린이	무료	무료	"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동호회	50,000		1개월, 4회 4명 기준	충주시 조정체험장 동 호회에 가입한 사람

※ 동절기(매년 11월~2월)에는 수상 체험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시 이용료의 50%를 감면한다.

[별표 2]

조정체험장 이용료 반환(제11조 관련)

구 분	이용일 14일 전 취소 시	이용일 13일~ 7일 전 취소 시	이용일 6일 전~ 당일 취소 시
반환율	100%	50%	0%

[별지 제1호서식]

조정체험장 위탁 운영 신청서

(제12조 관련)

법인(단체명)	(☎)		
소재지			
신청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그 밖의 사항			

「충주시 조정체험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충주시 조정체험장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주시장 귀하

갖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록 단체는 등록증) 등본 1통	수수료 없음
	2. 법인(등록 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충주시 조정체험장 위탁 운영 계획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조정체험장 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

(제12조 관련)

법인(단체명)	(☎)		
소재지			
신청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기간	처음	~	연장
사유			
그밖의 사항			

「충주시 조정체험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주시장 귀하

갖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록 단체는 등록증) 등본 1통 2. 법인(등록 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충주시 조정체험장 위탁 운영 계획 1부 4. 그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가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의안명 : 충주시 조정체험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
- 관련조문
제14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제정안에 따라 시장은 조정체험장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 신동식